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40
------------	------

2016년 12월 2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16년 12월 20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출석 심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서면 심의 개정 조치 요구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 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연임 삭제)
- 다. 서면심의 삭제
- 라. 세부변경사항: 신·구대비표 참고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40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서면심의 삭제 등 일부내용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그리고 과징금 부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106조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먼저 당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6년 11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이보다 먼저 2016년 1월 15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단순 반영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계약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준 : 2016.9.30.)

구분	소속	직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당연직
위원	(사)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전문위원 . 중앙대학교 강사 . 교통안전공단 청렴옴브즈만	신규
위원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신규
위원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장	.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장 . 서울시 재무과 세무소송팀장	신규
위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경희대 공공대학원 제1기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 연구과정 수료 . 서울특별시 원가조정거버넌스 건축위원 . 국가기술자격증 등록번호 95204100307N (건축기사1급)	신규
위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서울특별시회	과장	. SH종합건설(주) 차장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 G00479859(토목 초급)	신규
위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차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과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 국가기술자격증 등록번호 97202050238X (건축기사1급)	신규
간사	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장	간사

※ 위원임기 : 2016.10. 1. ~ 2018. 9.30.(2년)

○ 한편 동 조례 제5조제4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하여금 신속한 의결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546,2016.9.1.1))하였는바,

1) 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을 출석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면심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각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설득의 과정을

동 조례 제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중요한 계약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의 업무 책임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구분	2013	2014	2015	2016
서면심의 횟수	3	3	7	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한다.

제5조제4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p> <p>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 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3조(임무 및 임기)</p> <p>① (생략)</p> <p>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p> <p>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p> <p>① ----- -----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②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제3조(임무 및 임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